

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02년 10월 일

발 의 자 : 김민자의원의외 9인

☐ 제안사유

시의원이 국외출장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외 출장에 관한 주요사항을 과반수 이상의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 하도록 하여 국외출장의 공무 관련성, 투명성, 민주성을 제고 하기 위함.

☐ 주요골자

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항중 “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”를 삭제하고 7인 이내로 의장이 위촉하되 대학교수 2인, 시민사회단체 대표 2인, 의회 부의장,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2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된다”를 삽입함.

☐ 참고사항

-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
- 행정자치부 운영13130-529(2001.7.11), 13130-657(2001.8.16), 13130-1043(2001.12.20)공문
- 경기도 기획13130-11531(2001.7.14)공문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심사위원회설치·운영) ①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위한 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한다.	제4조(심사위원회설치·운영) ①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<u>위원은 7인 이내로 의장이</u> <u>위촉하되 대학교수 2인, 시민사회단체</u> <u>대표 2인, 의회 부의장, 의회운영위원회</u> <u>위원 2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의회</u> <u>부의장이 된다.</u>

성남시의회규칙 제 호

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

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4조 제1항중 “의회운영위원회위원회 위원으로 한다”를 삭제하고 “7인이내로 의장이 위촉하되 대학교수 2인, 시민사회단체 대표 2인, 의회 부의장, 의회운영위원회위원 2인으로하고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된다”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